

제329회 임시회  
2014.04.14.(월)

# 심 사 보 고 서

○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



충청북도의회  
산업경제위원회

# 「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2014.04.14(월)

산업경제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- 나. 제출일자 : 2014년 3월 31일
- 다. 회부일자 : 2014년 4월 2일
- 라. 상정일자 : 2014년 4월 8일

(제32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)

#### 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#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경제통상국장 윤재길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중요 축인 G2로 부상함에 따라 수출 확대 및 통상 증진을 위한 지방차원의 국제교류 필요성 증대
- 새로운 국제교류협력 파트너로 중국 중부 핵심거점 지역인 호북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도정의 국제화 강화

- 정부에서도 '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'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호혜적인 한·중 FTA, 원전분야 협력강화, 산업기술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할 방침임.
- 충청북도와 중국 호북성과는 지난 2006. 9. 15. 우호교류의향 및 2012. 6. 25.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, 양 대표단 상호방문, 예술단 상호 파견,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대표단 파견 등 국제교류가 상당히 진척되어 국제교류수준의 최고단계인 자매결연 체결 필요성이 증대되었음.
- 양 지역 간 국제교류 협력수준의 최고단계인 자매결연을 체결 협의가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, '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'에 의거,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자매결연체결 장소와 시기
  - 충청북도 대표단이 2014년도 하반기(11월 중)에 호북성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.
- 자매결연협정서의 주요내용
  - 양 지역 간 상호 이해도모와 우호증진 시책 운용
  - 농업, 여성, 문화, 관광, 과학분야 등의 상호교류 증대
  - 경제 비교우위 분야 발굴을 통한 동반성장 도모
  - 공무원 상호파견, 정책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
  - 양 지역대학 간 교류 및 학술분야 교류 지원 등,  
다양한 분야에 인력교류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양 측의 상호 발전적 성장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함.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: 나기성)

- ‘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’은 지난 2006년 9월 15일 양 기관간 우호교류의향 및 2012년 6월 25일에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,
- 양 대표단 상호방문, 예술단 상호 파견,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대표단 파견 등 국제교류가 상당히 진척되어 국제교류수준의 최고단계인 자매결연 체결 필요성이 증대되어, 관련 조례에 따라 올 11월 중에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농업, 여성, 문화, 관광, 과학분야 등의 상호교류를 증대하고, 경제 비교우위 분야를 발굴하여 동반성장을 도모함은 물론 양 지역 간 상호 이해도모와 우호증진 시책 등을 운용하는 것으로 사업추진은 타당함.
- 다만, ‘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’ 제6조제 1항에 따라 자매결연 체결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 한 것처럼 안건의 제목을 ‘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’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됨.
- 또한, 양 기관간 무역교류 등 경제분야, 농업, 문화, 관광, 과학분야 와 인력교류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’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“수정가결”

## 7. 수정안요지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4. 4. 8, 김도경 의원
- 수정이유
  - 검토보고서에 동 안건이, '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'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체결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안건의 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적절함
- 수정 주요내용
  - 안건의 제목을 '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'으로 한다.

8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'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'에 대한 수정안 등

#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

제안연월일 : 2014.4.8

제안자 : 김도경 위원외

## ■ 수정이유

- 계획안이 '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'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 체결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과, 중국의 정식 국명이 '중화인민공화국'임을 감안하여 안건의 제목을 수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## ■ 수정 주요내용

- 안건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

## 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에 대한 수정안

중국 호북성과 자매결연 체결 계획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- 안건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간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

[수정후]

의안번호	제649호
의 결 연 월 일	2014년 4 월 일 (제 329 회)

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간  
자매결연 체결 동의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4년 3월 31일

# 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간

##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

의안 번호	649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4년 3월 31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### 1. 제안사유

- 중국이 미국과 함께 세계경제의 중요 축인 G2로 부상함에 따라 수출 확대 및 통상 증진을 위한 지방차원의 국제교류 필요성 증대
- 새로운 국제교류협력 파트너로 중국 중부 핵심거점 지역인 호북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도정의 국제화 강화
- 정부에서도 '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'를 더욱 내실 있게 발전시키고 호혜적인 한·중 FTA, 원전분야 협력강화, 산업기술 등 협력 분야를 확대할 방침임.
- 충청북도와 중국 호북성과는 지난 2006. 9. 15. 우호교류의향 및 2012. 6. 25.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이래, 양 대표단 상호방문, 예술단 상호 파견,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대표단 파견 등 국제교류가 상당히 진척되어 국제교류수준의 최고단계인 자매결연 체결 필요성이 증대되었음.
- 양 지역 간 국제교류 협력수준의 최고단계인 자매결연을 체결 협의가 이루어지고 분위기가 성숙되었다고 판단되어, '충청북도와 외국자치단체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'에 의거,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○ 자매결연체결 장소와 시기

- 충청북도 대표단이 2014년도 하반기(11월 중)에 호북성을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함.

### ○ 자매결연협정서의 주요내용

- 양 지역 간 상호 이해도모와 우호증진 시책 운용
- 농업, 여성, 문화, 관광, 과학분야 등의 상호교류 증대
- 경제 비교우위 분야 발굴을 통한 동반성장 도모
- 공무원 상호파견, 정책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
- 양 지역대학 간 교류 및 학술분야 교류 지원 등,  
다양한 분야에 인력교류 및 상호 협력을 통한 양 측의 상호 발전적 성장을 위한 공동노력에 합의함.

## 3. 참고자료 : 붙임

- 양 지역 비교표 및 호북성 개황 : 붙임 1
- 양 지역 교류현황 : 붙임 2
- 향후 교류계획 : 붙임 3
-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의 기대효과 : 붙임 4
- 우호교류의향서 사본 : 붙임 5
- 우호교류협정서 사본 : 붙임 6
- 비망록 사본 : 붙임 7
- 자매결연협정서(안) : 붙임 8

**붙임 1**

**□ 양 지역 비교표 및 회복성 개황**

○ 양 지역 비교표

(2012. 12월말)

구 분	충 청 북 도	호 북 성
면 적	○ 7,406km <sup>2</sup>	○ 185,900km <sup>2</sup> (남한 9.96만km <sup>2</sup> 의 약 1.9배)
인 구	○ 160만 명	○ 6,100만 명
위 치	○ 대한민국의 중앙 ○ 바다에 접하지 않는 유일한 내륙도	○ 중국 중부 장강 중류에 위치 ○ 중부지역 발전을 위한 중국 정부의 투자지역
주 도	○ 청주시 68만	○ 우한시 936만
기 후	○ 온대 몬순 기후	○ 아열대 습윤기후
GRDP	○ 약 347억 불 (38조 7,578억 원)	○ 약 3,164억 불 (340조 351억 원)
1인당 GRDP	○ 약 22,535불	○ 약 5,285불
산 업	○ 서비스 기타 : 51.5% ○ 제 조 업 : 44% ○ 농림어업 : 4.5%	○ 서비스 기타 : 36.8% ○ 제 조 업 : 50.1% ○ 농림어업 : 13.1%
주요 수출품목	○ 전자전기>기계류>화학공업	○ 원자료>기계류>전자부품
주요 수입품목	○ 전자전기>화학공업>농림수산	○ 전자기계>전자부품>보일러
관광자원	○ 속리산, 소백산, 월악산 국립공원 ○ 청남대, 직지 박물관 ○ 충주댐, 대청댐 등	○ 징저우시(옛 형주) ○ 삼국성 : 삼국지 테마파크 ○ 우당산 : 세계문화유산 ○ 장강삼협, 산샤댐, 동호 등

## ○ 호북성 개황

### 가. 위치도



### 나. 주요 경제지표

구분	단 위	2007	2008	2009	2010	2011
국내총생산액	억 위안	9,150	11,330	12,832	15,806	9,594
경제성장율	%	14.5	13.4	13.2	14.8	13.8
소비자 물가지수	%	3.2	1.5	△0.4	2.9	5.8
고정자산투자	억 위안	4,534	5,799	8,212	10,803	12,932
공업총생산액	억 위안	2,823	3,842	4,742	6,137	8,566
수 출	억 달러	80	114	94	139	191
수 입	억 달러	73	98	82	121	146
무역수지	억 달러	7	16	12	18	45
외국인 투자금액	억 달러	27.66	32.45	36.58	40.50	46.55

※ 자료 : 호북성 통계국, KITA 중국무역통계

## 다. 역 사

- 하(夏) 왕조 시기 하(夏)나라 문화는 일찍이 장강 지역에 영향을 끼쳤으며, 춘추전국시대에는 초(楚)나라의 영토였음.
- 삼국시대에는 적벽대전과 이릉대전이 벌어졌던 위·촉·오 삼국이 치열하게 다투던 곳.
- 진(秦) 나라 때는 대부분이 장사군(長沙郡)에 속하였으며, 한(漢) 나라 때는 형주북로에 속하였고, 당(唐) 나라 때는 호남관찰사를 두었다. 송(宋) 나라때는 형호북로였으며, 청(淸) 나라에 이르러 호북성(湖北省)이 설치되었음.

## 라. 시장특징

- 2006년 4월 국가 전략으로 정식 채택된 ‘중부굴기 프로젝트’와 성 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중부지역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증가 중이며,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집중투자됨.
- 우한 한커우베이(漢口北)에 300여억 위안을 투자해 1,500만m<sup>2</sup>의 물류 및 도매 허브(우한 한커우베이 상무 물류 지구)를 건설함. 이 물류, 도매 허브는 연수익 5,000억 위안 창출을 목표로 함.
- 2015년까지 중부 지역의 도시화율을 48%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초 시설을 비롯한 고정자산 투자를 확대함. 2009년 중부지역은 고정자산 투자액이 4조 1,039억 5,600만 위안임

- 광통신, 자동차, 철강, 석유화학, 식품, 방직의 6개 산업은 각각 1,000억 위안 이상의 규모를 형성하는 호북성의 대표산업임
  - 광통신 : 중국 최대 광통신산업단지 ‘우한 광밸리’
    - ※ 2011년 총 생산액은 400억 위안으로 중국 내 최대 광섬유, 광케이블, 광네트워크 생산단지이며 생산량이 세계 1위임
  - 자동차 : 3대 자동차 생산기지, 중형차 생산량이 최대 지역임
  - 철 강 : 3대 철강생산기지, 2009년 조강생산량 세계 5위 기록
  - 화 학 : 180억 위안 규모 폴리에틸렌 생산 프로젝트 진행
  - 식 품 : ‘어미지향(魚米之鄉)’이라고도 불리는 물고기와 쌀의 고장임, 기초 식품자원이 풍부
  - 방 직 : 중부지역 방직산업의 메카
  - 기 타 : 조선, 환경, 물류산업 급속도로 성장 중임

#### 마. 대외무역 현황

- 대외무역 현황(2011년)
  - 대외교역 규모는 337억 달러로, 수출액은 191억 달러, 수입액은 146억 달러임
  - 주요 교역상대국 : 미국, 일본, 호주, 홍콩 순
  - 주요 수출품목 : 원자로, 보일러, 기계류, 전자기계
  - 주요 수입품목 : 광석·화산암재, 전자기계, 전자부품

## 붙임 2

### □ 양 지역 교류현황

- 2006. 9. 우호교류 의향서 서명(9.15. 부지사 ↔ 부성장, 충북도)
- 2012. 6. 호북성 대표단(단장 : 정협주석) 충청북도 방문
  - 오송바이오밸리 등 전략산업 시찰 및 법주사 등 문화탐방
- 2012. 6. 호북성과 우호교류협정 체결
  - 양 정부 우호교류협정서 서명(6. 25. 도지사 ↔ 정협주석)
- 2012. 9. 호북성 한강정 행사 참석
  - 뷰티박람회 · 관광 · 바이오 산업간 협력 방안 협의
- 2012. 9. 중국무당과 세계무술연맹 가입 추진
  - 호북성 무당과의 세계무술연맹(본부 충주시) 가입 추진
- 2012. 9. 무한바이오밸리와 충북TP 교류협력 추진
  - 바이오 산업 및 기술교류에 관한 협력 추진
- 2012. 10. 제2회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공연대표단 54명 참가
- 2013. 3.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홍보를 위한 도지사 호북성 방문
  - 양 정부 비망록 서명(3. 20. 도지사 ↔ 호북성장)
- 2013. 5. 호북성 정부대표단 오송화장품뷰티박람회 참가
  - 충북TP와 MOU체결(TP원장 ↔ 바이오레이크 부사장)
- 2014. 3. 자매결연 실무협의단(단장: 국제통상과장) 호북성 방문

### 붙임 3

#### □ 향후 교류계획

##### ○ 양 지역 간 상호 이해도모와 우호증진 시책 추진

- 양 도·성의 상호 이해를 위한 국제교류 프로그램 공동개발
- 민간차원의 예술, 청소년, 스포츠 분야 등 교류

##### ○ 농업, 여성, 문화, 관광, 과학 분야 등의 상호교류

- 다양한 분야의 정부, 민간 행사에 상호 적극참여 및 지원
- 양 지역 주요산업 관련 정책 및 기술정보 교환

##### ○ 경제 비교우위 분야 발굴을 통한 동반성장 협력

- 양 지역의 우수제품 판매 및 전시행사 정보 교환
- 양 지역의 경제대표단 상호 교류를 통한 민간 네트워크 구축

##### ○ 공무원 상호파견, 정책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

- 양 지역정보와 정책교환을 통한 행정수요 파악 및 정책개발
- 양 지역의 미래지향적 상생발전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

##### ○ 양 지역대학 간 교류 및 학술분야 교류 지원

- 도립대학 및 기타 도내 대학과의 교류 지원
- 양 지역 청소년 상호방문 교류 프로그램 추진

□ 자매결연 및 교류협정의 기대효과

- 중국 중부지역과 교류 확대를 위한 핵심거점 확보
  - 호북성은 중부지역의 핵심 관문으로 인근의 하남성, 강소성, 호남성과도 교류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교통 및 경제 핵심거점임.
  - 호북성은 중국내에서 세번째로 대학교가 많고 대학생 수가 120만명 으로 인재확보가 쉬움.
- 경제, 농업, 환경보호기술 정보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
  - 상품의 현지 구매정보 교류를 통한 무역 및 투자 활성화
  - 양 지역 경제정보 교류 및 무역거래 활성화
  - 선진농업 및 환경보호기술의 지원을 통한 관련 제품의 수출 증진
- 중국 중부지역으로의 국제교류 다변화
  - 국제교류 관계의 다변화를 통한 중국 중부지역과의 대응력 향상
  - 세계화와 지방화를 동시에 이루어 지방정부간 발전적 관계 정립
  - 양 국가간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정부간 경제, 행정, 문화, 농업, 대학 분야 등 실질적인 교류 추진
- 학술 및 청소년 교류를 위한 대학 간 교류 확대
  - 양 지역 대학 간 자매결연 체결 등 교류 지원
  - 교수·교사 및 학생의 상호 교환 연수 프로그램 운영
-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세계시민으로 의식 및 수준 제고
  - 국제교류를 통한 도민 의식의 선진화 및 세계시민 의식 제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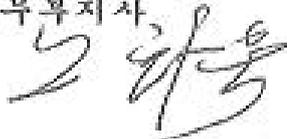
## 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과의 우호 교류의 향서

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은 양도·성의  
공동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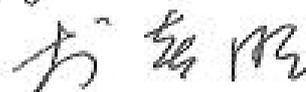
1. 양도·성은 상호이익과 호혜평등의 원칙에 의거, 경제·무역·  
문화·교육·체육·위생·인적분야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  
관계를 유지한다.
2. 양도·성은 관계부서를 통해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토대로  
상호교류와 협력 및 공동의 관심분야에 협의를 진행해  
나간다.
3. 충청북도는 국제통상실을, 호북성은 외사관공실을  
양지역의 연락창구로 지정하여, 양지역의 우호 교류 및  
이와 관련된 업무처리를 추진토록 한다.

본 우호교류의향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  
하여, 2006년 9월 15일 충청북도에서 양지역 대표가  
서명하고,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대한민국 충청북도  
정무부지사



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  
부성장



## 대한민국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호북성의 우호 교류 협정서

대한민국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호북성은 양 지역의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.

1. 쌍방은 호혜 평등의 원칙에 의거하여, 경제·무역·과학기술·문화·청소년·교육·체육·위생 등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전개한다. 아울러 다양한 교류와 협력의 기초 위에, 양 도·성의 우호 관계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.

2. 쌍방 관련 부서에서는 일상 연락 통로를 원활히 유지하며, 적시에 상술한 각 분야의 교류협력 정보를 소통하고, 상호 교류와 협력 및 공동의 관심 분야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며, 양 도·성 간 교류협력 영역을 끊임없이 확대한다.

3. 쌍방 지도자는 정기적으로 상호 방문하며, 전문영역설명회 개최를 통해 교육·문화·위생 교류 및 기업 대표단 교류 등 여러 형태의 교류를 전개하여, 우호 관계를 공고히 발전시킨다.

4. 본 합의의 각 항을 구체적으로 실시하고, 양 도·성의 교류 협력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, 충청북도는 경제통상국을, 호북성은 외사판공실을 양 지역의 연락 창구로 지정하여, 양 지역의 구체적인 우호교류협력사업을 책임진다.

본 협의서는 한국어와 중국어로 각 2부씩 작성하여, 2012년 6월 25일 충청북도에서 양 지역 대표가 서명하고, 서명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.

대한민국 충청북도  
도지사

이시종

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  
정협주석

栢松

## 붙임 7

# 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간 비 망 록

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은 2006년 9월 15일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양지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류와 협력발전을 위해 2012년 6월 25일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하였으며, 양 지역의 교류는 관광, 교육부분은 물론, 문화체육·의료·청소년 등 분야로 점차 확대 할 것을 약속한다.

쌍방은 현재까지 다져진 공고한 우호관계를 토대로 상호 이익을 더욱 증대시키고 공동발전을 추구하기 본 비망록을 교환 한다.

1. 쌍방의 학술·문화·교육 등 광범위한 부문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심화하며, 양 지역 우호교류의 교량과 중추역할을 할 인재를 양성하여 학술·문화·교육 등 영역에서 사업을 상호 번영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 한다.

2. 쌍방의 경제·무역·관광 등 영역의 정보교환 및 인재교류를 촉진하여 상호 기업의 경제무역·과학 등 영역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고 적극 노력한다.

3. 양 도·성은 우호교류와 협력 촉진, 세계평화에의 공헌, 공동 번영과 발전을 추구하며 내년에 자매도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광범위하게 협력 한다.

대한민국  
충청북도지사

이시종

중화인민공화국  
호북성장

왕국진

대한민국 충청북도와 중국 호북성간

## 자 매 결 연 협 정 서(안)

충청북도지사가 대표하는 대한민국 충청북도와 호북성장이 대표하는 중국 호북성(이하 “양 도·성” 이라 한다)은

- 2012년 6월 25일 충청북도에서 서명한 우호 교류협정서와
- 상호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에 합의한다.

### 제 1 조

양 도·성은 국제교류사업이 양측의 동일한 수준의 행정적 지원 아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며, 동 사업이 양 지역 발전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상호 유익한 협력관계로 확대·발전시키기로 합의한다.

### 제 2 조

1. 양 도·성은 다음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상호 협력한다.

- 가. 양 지역 간 상호 이해도모와 우호증진 시책 운영
- 나. 농업, 여성, 문화, 관광, 과학 분야 등의 상호교류 증대
- 다. 경제 비교우위 분야 발굴을 통한 동반성장 도모
- 라. 공무원 상호파견, 정책교류 및 연수 프로그램 운영
- 마. 양 지역대학 간 교류 및 학술분야 교류 지원
- 바. 기타 양 도지사·성장이 합의하는 분야

2. 양 도·성은 자국 내 법규를 준수하며, 협력증진을 목표로 한다.

### 제 3 조

1. 충청북도 및 호북성 정부의 해당 부서는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협력 분야를 실현시키기 위해 공동사업을 기획한다.

2. 제2조 1항에 관련한 업무조정을 위해 양 지역의 해당 부서는 동등하게 책임을 진다.
3. 제1항과 관련된 해당 부서는 공동 기획사업의 실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한다.

#### 제 4 조

이 협정서에 규정된 사업실천과 관련하여, 양측은 각각의 국내법규를 준수한다.

#### 제 5 조

이 협정서의 해석 및 이행에서 발생된 모든 분쟁은 양측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한다.

#### 제 6 조

이 협정서는 서명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.

#### 제 7 조

이 협정서는 무기한 유효하다. 다만, 협정의 파기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, 통보일로부터 6개월 후에 효력을 상실한다.

#### 제 8 조

이 협정서는 동일한 내용의 한국어와 중국어로 작성하여, 이를 양측이 보관한다.

2014. . .

대한민국 충청북도지사

중화인민공화국 호북성장